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814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순천리 F 대 278㎡에 관하여 2019. 12. 13.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2. 16. 접수 제54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9. 11. 4.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1,121,967원을 연체한 사실, 2020. 9. 10. 현재 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자 등 포함)은 합계 7,431,600원인 사실, E은 2019. 12. 13.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2. 16. 접수 제546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2. 16. 접수 제5465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에 대한 23,300,000원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